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가단51468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피고B

변론 종결 2022. 7. 12.

판결 선고 2022. 9.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1.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8,544,44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544,44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D 주식회사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중 연체하였고, 위 채권은 전전 양수되어 2013. 8. 12. 원고가 최종 양도받았다.

2) 원고는 위 양수금채권에 대하여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18682 사건에서 "C는 원고에게 78,384,877원과 그 중 18,426,570원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와 피고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1) C의 아버지 E가 2019. 1. 27.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F, 자녀인 피고, C, G가 있었다.

2) 위 상속인들은 2019. 1. 27. 망 E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위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2019.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2/9)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535,000,000원이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부터 망 E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26,55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9. 8. 5.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2. 4. 1. C의 채권자인 H은 C에 대한 2016. 2. 17.자 대여금 8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9,433,3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금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4. 14. H과 사이에 C의 채무와 관련하여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후 2022. 5. 12. H에게 위 돈 중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한도인 68,544,444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C의 다른 채권자 H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채권자 중 1인에게만 가액배상금을 지급한 피고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익자가 확정된 판결 등에 기초하여 해당 채권자에게

재산이나 가액을 반환함으로써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여, 그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수익자와 해당 채권자가 통모한 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다른 채권자의 신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확정된 판결 등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을 마친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948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 별도로 C의 다른 채권자인 H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H과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한도인 68,544,444원¹⁾을 초과하는 70,000,000원을 H에게 지급함으로써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고와 H의 위 행위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H이 원고를 비롯한 C의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행위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가액배상금을 일부 채권자에게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였다).

판사이문세

별지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26,550,000원을 공제한

308,450,000원에서 채무자 C의 상속지분 2/9에 해당하는 68,544,444원($308,450,000\text{원} \times 2/9$,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상하고 있다.